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는 주택(단독.공동)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로 1개년도별 3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.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- 성주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(제3조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5. 4. 1 - 2005. 4. 20) 결과 : 다른 의견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**"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"를 "성주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"로 한다.**

별표 1의 구분란 중 제8호에 ③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[별표 1]

제증명수수료요율표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[증 명] 8.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③ 주택가격확인서	1개년도별	300	

제7조제1항제1호중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을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〔별표1〕 제증명수수료요율표

(단위:원)

구 분	기준	요액	비고
〔증명〕			
1.~7.(생략)			
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1통	300	
① 납세증명	1건	600	
② 세목별과세증명			
③ 신설	신설	신설	

개 정 안

〔별표1〕 제증명수수료요율표

(단위:원)

구 분	기준	요액	비고
〔증명〕			
1.~7.(현행과같음)			
8. ---------- ----	--	--	
① ----------	--	--	
②----------			
③ 주택가격확인서	1개 년도별	300	